

29. 서울特別市濟州觀光植物園여미지運營에關한 條例案(서울特別市長 提出)

(14時 41分)

○議長 文一權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特別市濟州觀光植物園여미지運營에關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

(參 照)

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

1998년 4월 9일  
생활환경위원회

1. 회부안건

○ 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관한 조례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1998년 4월 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: 1998년 4월 3일

다. 의안번호: 제1149호

라. 상정일자: 제10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(98.4.6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원안가결

3. 제안설명요지(환경관리실장: 탁병오)

□ 제안이유

○ 삼풍사고와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제주도 소재 여미지식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

○ 여미지식물원의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첫째, 여미지 식물원을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입장료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요금은 계우개발(주)로부터 인수할 당시 요금을 그대로 반영하였음.

입장료: 어른 5,000원, 청소년 3,800원, 어린이·노인 2,500원  
이용료: 유람동차 성인 1,000원, 어린이 500원

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 등이 입장할 때에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음.

○ 둘째, 여미지식물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식물원으로 국내·외 관광객으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지이므로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.

○ 셋째, 식물원의 관리 업무성격인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희귀식물 등 생명체를 다루는 업무이므로 전문인력과 기술 등을 보유한 공기업 및 법인 또는 개인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위탁받은 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음.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임령)

○ 동 조례안은 삼풍사고와 관련하여 기부채납된 제주도 소재 여미지식물원을 지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제주도 관광 식물원 여미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임.

○ 동 조례안은 여미지식물원을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입장료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 입장료 및 이용료는 계우개발(주)이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관광진흥과에 신고한 인수한 당시의 금액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는 제주도의 타 관광지 입장요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며, 제주도민 50% 감면은 제주도의 다른 유명관광지 대부분이 무료 또는 50% 할인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종전대로 50% 감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함.

<p>그리고 식물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기술 등을 보유한 공기업 및 법인 또는 개인에게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해지 규정을 두고 있는바, 지난 제102회 임시회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시설관리 공단에 여미지식물원위탁관리동의안 가결 시 입자가 있을 때는 곧바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조례안 제10조 제1항제3호에 “식물원의 매각 또는 공익 상의 사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위탁관리 운영으로 인해 매각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였음.</p> <p>○ 동 조례안은 식물원에 입장하는 자 및 이용자에게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식물원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질의 및 답변 : 생략          6. 소수의견 : 없음.         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 11명, 만장일치)          8. 기타사항 : 없음.</p> <p>.....</p> <p>○議長 文一權 그러면 서울特別市濟州觀光植物園여미지運營에關한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.</p> <p>議員 여러분, 이의 없으십니까?         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         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         (讓事棒 3打)</p> <p>.....</p> <p>(參 照)</p> <p>서울특별시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운영에關한조례안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(이하 “식물원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위치 등) 식물원의 위치 및 주요시설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위치 :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동 2484-1</p>	<p>의</p> <p>2. 주요시설 : 온실, 민속정원(한국, 일본, 이태리, 불란서), 휴게소, 매점 등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식물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제4조(입장료 등) ①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에 입장하는 자 및 이용자에게 별표의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다.</p> <p>②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원의 관리·운영을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징수한 입장료 및 이용료를 징수한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.</p> <p>제5조(입장료등의 면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빈,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</li> <li>2. 공익 또는 학술·연구·조사목적으로 출입하는 자</li> <li>3.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</li> <li>4. 국가유공자등에우뮓지원에關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. 다만,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.</li> <li>5.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용사증을 소지한 참전용사</li> <li>6. 기타식물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</li> </ol> <p>제6조(이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식물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위험물(총포류, 도검류, 화공약품, 농약 등), 악취,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</li> <li>2.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</li> </ol> <p>제7조(운영의 위탁) ①시장은 식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설립한 공기업, 법인 또는 개인에게</p>
---	---